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석유 및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과 사용 확대를 지원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201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친환경 정제원료의 범위와 사용내역 보고내용,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의 행위금지, 석유대체연료 전담기관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글로벌 석유시장의 불안정성 심화, 중동 수입의존도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여 '24.12월 일몰 예정인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을 '27.12월 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취급유종 정비(안 제2조제8호·제9호·제10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대리점·주유소·판매소)는 시행령에 규정된 석유 대체연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연료만 취급하도록 함

나.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신설(안 제5조)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바이오항공유, 재생합성디젤, 재생합성항공유 등 석유대체연료의 세부 유종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의 변경등록 사항에 “생산유종” 추가
(안 제33조제6호)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가 생산유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의무화

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지원 사업 추가 및 전문기관 지정(안 제41조의2)
석유대체연료의 정보 수집·분석, 통계관리,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국제협력,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지원사업 내용 추가(안 제41조의2 제1항)

석유대체연료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한국석유관리원’을 지정(안 제41조의2제2항)

마. 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 보고의 구체적인 내용 신설(안 제42조의3)
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 보고의 내용으로 원료의 종류, 투입공정, 생산유종, 친환경정제원료 확인자료 등을 규정하고,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 보고시기 및 보고방법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위임

바.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의 행위 금지 규정 신설(안 제43조)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가 석유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른 폐광물유를 활용하여 재활용한 물질을 바이오연료로 공급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43조제1항제11호)

사. 권한의 위탁 업무 추가(안 제45조제4항제16호의2 및 제18호)

석유정제업자의 친환경정제원료 사용내역 보고 접수·확인 및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 준수 여부 확인 업무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

아.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 연장(안 제27조제3항)

다변화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석유수입부담금에서 환급하는 지원제도를 '27.12월까지 연장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석유대체연료[식물성유·동물성유를 사용하여 제조한 연료(이하 “바이오디젤”이라 한다), 식물성 원료에서 추출한 알코올(이하 “바이오에탄올”이라 한다) 및 석탄·천연가스·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하는 합성가스를 사용하여 직접 합성공정 또는 메탄올을 통한 간접 합성공정을 거쳐 생산된 연료(이하 “디메틸에테르”라 한다)는 제외한다]”를 “제5조의 석유대체연료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전단 중 “바이오디젤연료유(바이오디젤은 제외한다), 바이오에탄올연료유(바이오에탄올은 제외한다), 석탄액화연료유, 가스액화연료유, 디메틸에테르연료유(디메틸에테르는 제외한다) 및 제5조제9호”를 “제5조”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유화연료유 및 제5조제9호”를 “제5조”로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9호) 중 “그”를 “유화연료유, 디메틸에테르, 그”로,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기”를 “탄소중립화에 기여하거나 에너지 이용효율을 제고하기”로 한다.

1. 바이오연료: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바이오항공유, 바이오메탄올, 바이오에탄올

2. 재생합성연료: 재생합성디젤, 재생합성항공유, 재생합성메탄올, 재생합성가솔린

제27조제3항 중 “2024년 12월 31일”를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3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생산유종

제41조의2를 제41조의3으로 하고,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과 석유대체연료센터의 설치기관) ① 법 제3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석유대체연료의 정보 수집·분석 및 통계 관리
2. 석유대체연료의 기술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3. 석유대체연료의 표준화
4. 석유대체연료의 산·학·연 기술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
5. 석유대체연료의 국제협력
6. 석유대체연료센터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7.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법 제3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석유관리원을 말한다.

제42조의3을 제42조의4로 하고, 제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3(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 등) ① 법 제38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정제업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사용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정제원료의 종류 및 투입량
2. 친환경정제원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친환경정제원료의 투입공정
4. 친환경정제원료로 생산되는 유종

② 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가 석유정제시설에 친환경정제원료를 최초 투입하거나 투입한 친환경정제원료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등 사용내역의 보고 시기와 방법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가 석유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른 폐광물유를 활용하여 제조한 물질을 바이오연료로 공급하는 행위

제45조제4항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39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으로 한다.

- 16의2. 법 제38조의3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의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 보고 접수·확인

별표 1 제2호의 취급 석유대체연료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구분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	취급 석유대체연료
등록 대상	석유대체연료 대리점	○제5조의 석유대체연료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휘발유·경유·등유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5조의 석유대체연료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
	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유·중유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5조의 석유대체연료로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연료

별표 6 제2호가목4) 다음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개별기준

가.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등록대상				신고대상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5) 법 제38조의 3을 위반하여 친환경정제원의 사용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 제6호의2								

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500만원	1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명백한 오기 또는 계산상 오류가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경고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경고	500만원	1천만원	2천만원
(2) 그 밖의 경우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500만원	1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	
8. “석유대체연료 대리점”이란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로부터 <u>석유대체연료[식물성유·동물성유를 사용하여 제조한 연료(이하 “바이오디젤”이라 한다), 식물성 원료에서 추출한 알코올(이하 “바이오에탄올”이라 한다) 및 석탄·천연가스·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하는 합성가스를 사용하여 직접 합성공정 또는 메탄올을 통한 간접 합성공정을 거쳐 생산된 연료(이하 “디메틸에테르”라 한다)는 제외한다]</u> 를 공급받아 이를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를 말한다.		8. -----	-----	<u>제5조의 석유대체연료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u> -----
9. “석유대체연료 주유소”란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대리점으		9. -----	-----	

로부터 바이오디젤연료유(바이오디젤은 제외한다), 바이오에탄올연료유(바이오에탄올은 제외한다), 석탄액화연료유, 가스액화연료유, 디메틸에테르연료유(디메틸에테르는 제외한다) 및 제5조제9호의 석유대체연료(휘발유·경유·등유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만 해당한다)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석유대체연료 판매소”란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대리점으로부터 유화연료유 및 제5조제9호의 석유대체연료(등유나 중유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

제5조

- 10.

제5조

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만 해당한다)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대체 연료 판매업자를 말한다.

11. (생략)

제5조(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연료를 말한다.

1. 바이오디젤연료유: 바이오디젤 및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로 석유제품인 경유와 혼합하여 제조한 연료
2. 바이오에탄올연료유: 자동차 연료용 바이오에탄올 및 이를 석유제품인 휘발유와 혼합하여 제조한 연료
3. 석탄액화연료유: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여 물리·화학적 반응공정을 거쳐 생산된 연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석탄액화연료유는 제외한다) 및 이를 석유제품과 혼합하여 제조한 연료
4. 천연역청유(天然瀝靑油): 천

-----.

11. (현행과 같음)

제5조(석유대체연료의 종류) ---

-----.

1. 바이오연료: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바이오항공유, 바이오메탄올, 바이오에탄올
2. 재생합성연료: 재생합성디젤, 재생합성항공유, 재생합성메탄올, 재생합성가솔린

<삭 제>

<삭 제>

연역청물질을 물 및 계면활성제 등과 혼합한 연료

5. 유화연료유: 석유제품인 중유를 물 및 유화제와 혼합하여 제조한 연료

<삭 제>

6. 가스액화연료유: 천연가스나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하는 합성가스를 사용하여 물리·화학적 반응공정을 거쳐 생산된 연료 및 이를 석유제품과 혼합하여 제조한 연료

<삭 제>

7. 디메틸에테르연료유: 디메틸에테르 및 이를 석유제품과 혼합하여 제조한 연료

<삭 제>

8. 바이오가스연료유: 유기성(有機性) 폐기물이나 바이오매스를 소화(消化) 또는 발효시켜 만든 연료 및 이를 석유제품 또는 천연가스와 혼합하여 제조한 연료

<삭 제>

9. 그 밖에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이용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사용기기 [자동차 또는 이와 비슷한 내연기관, 보일러 및 노(爐)를 말한다]에 적합한 품질과 성능 및 안전성 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3. 유화연료유, 디메틸에테르, 그 --- 탄소중립화에 기여하거나 에너지 이용효율을 제고하기 ---

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연료

제27조(부과금의 환급 등) ① ~

② (생 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

2024년 12월 31일까지-----

-----있다.

제33조(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
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32
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5. (생 략)

<신 설>

<신 설>

제27조(부과금의 환급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

2027년 12월 31일까지-----

-----있다.

제33조(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
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

-----.

1. ~ 5. (현행과 같음)

6. 생산유종

제41조의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과 석유대체연료센
터의 설치기관) ① 법 제37조의
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석유대체연료의 정보 수집·
분석 및 통계 관리

2. 석유대체연료의 기술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3. 석유대체연료의 표준화

4. 석유대체연료의 산·학·연
기술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

5. 석유대체연료의 국제협력

제41조의2 (생략)

<신설>

6. 석유대체연료센터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7.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법 제3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석유관리원을 말한다.

제41조의3 (현행 제41조의2와 같음)

제42조의3(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 등) ① 법 제38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정제업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사용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정제원료의 종류 및 투입량

2. 친환경정제원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친환경정제원료의 투입공정

4. 친환경정제원료로 생산되는 유종

② 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가 석유정제시설에 친환경정제원료를 최초 투입하거나 투입한

제42조의3 (생략)

제43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① 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 10. (생략)

<신설>

②·③ (생략)

제45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 ③ (생략)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한다.

1. ~ 16. (생략)

<신설>

친환경정제원료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등 사용내역의 보고 시기와 방법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4 (현행 제42조의3과 같음)

제43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① -----

-----.

1. ~ 10. (현행과 같음)

11.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가 석유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른 폐광물유를 활용하여 제조한 물질을 바이오연료로 공급하는 행위

②·③ (현행과 같음)

제45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16. (현행과 같음)

16의2. 법 제38조의3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의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 보고 접수·확인

17. (생략)	17. (현행과 같음)
18. <u>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에</u> 따른 행위 금지의 준수 여부 확인	18. <u>법 제39조제2항, 제3항 및</u> <u>제5항</u> ----- --
19. ~ 21. (생략)	19. ~ 21. (현행과 같음)
⑤ ~ ⑨ (생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연 락 처	(044) 203 - 5221